

○ 제 목: 제69차 이사회
○ 일 시: 2023.05.31(수)18:30
○ 장 소: 남도명가

회 의 록



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

제69차 이사회 회의록

■ 회의소집 통지일 : 2023. 05. 17(수)

■ 일 시 : 2023. 05. 31(수) 18:30~19:40

■ 장 소 : 남도명가

■ 재적이사 총 8명 중 5명, 감사 1명 참석

- 이 사 : 김○근, 김○진, 김○화, 김○수, 이○연
- 감 사 : 강○표
- 배석인원 : 김○동

■ 안 건

- 제1호 안건 : 법인 및 산하시설 2023년 변경사업계획 및 추가경정예산(안)
- 제2호 안건 :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(안)
- 제3호 안건 : 법인임원(감사) 선임(안)
- 제4호 안건 : 법인 산하시설 차량 폐기처분의 건

■ 회의내용

1. 성원보고

김○동 국장이 재적이사 8명 중 5명과 감사 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김○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다

2. 개회

김○근 대표이사가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18:30분 수경복지재단 제69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.

3. 대표이사 인사

김○근 대표이사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함에 따라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다.

오늘 이사회에서는 2023년 변경사업계획 및 추가경정예산(안),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(안), 법인임원(감사) 선임(안), 법인 산하시설 차량 폐기처분의 건 등을 심의·의결하고자 하니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시며 인사에 갈음하다.



4. 전차회의록 처리

- 김○근 대표이사가 전차회의록 처리를 상정하고, 김○동 국장에게 전차회의록을 보고하게 하다.
- 김○동 국장이 제68차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하다.
- 김○수 이사가 전차회의록 검토 후 이의 없음을 말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.
- 이○연 이사가 재청하다.
- 김○근 대표이사가 전차회의록 처리에 관해 이의 없는지를 묻고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 처리하다.

5. 부의안 심의

□ 제1호 의안 : 법인 및 산하시설 2023년 변경사업계획 및 추가경정예산(안)

- 김○근 대표이사가 제1호 의안인 ‘법인 및 산하시설 2023년 변경사업계획 및 추가경정 예산(안)’을 상정하고 김○동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. (단위 : 천원)

시 설 명	당초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(B-A)
1) 비 슬 원	1,000,756	995,034	△5,722
2) 수경기억학교	472,268	475,068	2,800
3) 수경주간보호센터	724,657	736,552	11,895

- 김○동 국장이 회의 자료에 의거하여 비슬원, 수경기억학교 및 수경주간보호센터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하고, 전반적인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면 ‘법인 및 산하시설 2023년 변경사업계획 및 추가경정예산(안)’에 대해 설명 드리다.
- 김○화 이사가 회의 자료를 보니 각 시설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, 변경된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하다.
- 김○진 이사가 재청하다.
- 김○근 대표이사가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으므로 제1호 의안인 ‘법인 및 산하시설 2023년 변경사업계획 및 추가경정예산(안)’ 처리에 관해 이의 여부를 묻고, 이의 없으면 ‘예’로 표해 주시기를 말하자 참석이사 전원이 “예”로 찬성을 표하여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 처리하다.



□ 제2호 의안 :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(안)

- 김○근 대표이사가 제2호 의안인 ‘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(안)’을 상정하고 김○동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.
- 김○동 국장이 제2호 의안은 ‘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(안)’으로 인사규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, 후원물품의 원활한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물품관리규정에 ‘후원물품의 관리’ 조항 및 기부가액의 산정 및 산출기준을 별표로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, 비슬원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추가하였음을 설명 드린다.
- 김○진 이사가 물품후원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관련업무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업무수행이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,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.
- 김○수 이사가 재청하다.
- 김○근 대표이사가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으므로 제2호 의안인 ‘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(안)’ 처리에 관해 이의 여부를 묻고, 이의 없으면 ‘예’로 표해 주시기를 말하자 참석이사 전원이 “예”로 찬성을 표하여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처리하다.

□ 제3호 의안 : 법인임원(감사) 선임(안)

- 김○근 대표이사가 제3호 의안인 ‘법인임원(감사) 선임(안)’을 상정하고, 강○표 감사의 임기가 6월 16일로 만료되어 감사 한 분을 다시 선임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임원선임에 대한 의견을 묻다.
- 김○수 이사가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강○표 감사님의 재선임을 추천하다.
- 이○연 이사가 강○표 감사님께 법인의 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수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며 선출에 동의하다.
- 김○진 이사가 재청하다.
- 김○근 대표이사가 감사로 강○표 현 감사님에 대한 추천 및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으므로 감사로 선임하는데 이의 여부를 묻고, 이의 없으면 ‘예’로 표해 주시기를 말하자 참석 이사 전원이 “예”로 찬성을 표하여 강○표 감사님을 선출하였음을 선포하고 선출된 감사 님께서는 수경복지재단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다.



□ 제4호 의안 : 법인 산하시설 차량 폐기처분의 건

- 김○근 대표이사가 제4호 의안인 '법인 산하시설 차량 폐기처분의 건'을 상정하고 김○동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.
- 김○동 국장이 수경주간보호센터에서 운행하고 있는 12인승 승합차(72주 2309, 스타렉스)의 차령이 오래되고 노후화하여 수리를 통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폐기처분하고자 한다고 설명 드리다.
- 김○화 이사가 차량을 폐기처분할 경우 어르신의 송영 등 시설에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 묻다.
- 김○동 국장이 12인승 승합차(72주 2309 스타렉스)의 운행이 어려워 올해 4월부터 수경 기억학교의 스타렉스 차량을 어르신의 송영에 활용하고 있어 차량운행에 따른 문제는 없으며, 차량 최초등록 후 만 16년이 경과하여 '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'상의 내용연수를 경과하였음을 설명 드리다.
- 김○수 이사가 차량의 노후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정부의 자동차 내용연수를 충족하고, 어르신의 송영 등 시설 내 차량운행에도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므로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.
- 김○진 이사가 재청하다.
- 김○근 대표이사가 이의 여부를 묻고, 이의 없으면 '예'로 표해 주시기를 말하자 참석이사 전원이 "예"로 찬성을 표하여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처리하다.

□ 기타 논의사항

- 김○근 대표이사가 기타 논의사항이 없는가를 묻고 기타 논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다.

7. 폐회

- 김○진 이사가 폐회하기를 동의하고, 이○연 이사가 재청하다.
- 김○근 대표이사가 바쁘신 가운데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올해는 이른 데다가 찾아와 예년에 비해 힘겨운 여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하고, 김○진 이사님의 폐회에 대한 동의와 김○덕 이사님의 재청이 들어왔으므로 19:40분에 수경복지재단 제69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.



이상과 같이 제69차 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2023. 05.



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

대표이사 김○근



이사 김○진



이사 김○화



이사 김○수



이사 이○연



감사 강○표

